

제 1240 호
1986.1.27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도면
편집인 : 공보관 이광우
전화 : 731-6111-3
주소 :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
전화 : 735-3337

계	보도재정	공보재정	공보관	공보

시 보

차 례

◎ 고 시	
제 55 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지적승인	3
제 5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3
제 5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4
제 58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	4
제 5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인가 및 허가변경	5
◎ 공 고	
제 45 호 : 화재경계 지구지침	5
제 47 호 : 신문로구역제 1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공람	8
제 4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완료	9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예 규

제 473 호 : 서울특별시고충심사(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중개정규정 9

◎ 사 령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55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6호('86.1.1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

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신수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2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신설	주차장	마포구신수동 65-6번지 일대	844㎡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5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시 고시제 39호(85.1.18)호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2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8m	38m	마장동 778-5	마장동 779	
변경	"	"	"	"	"	"	폐지

나. 결정도면: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5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 호 ('86. 1.11)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된 관악구봉천동 215-3 일대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 법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1.27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신설	소로	3	4	35	관악구봉천 215-3	봉천동 218-14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58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56 호 ('85. 12.17) 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된 관악구신림동 도림교-서울대학교 입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1.27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신설	하수도	도림교-서울대학교입구간	폭 1m ~ 3.3m, 연장 8,660m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5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인가및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68 호 (81.10.10) 로 사업시행인가된 서울대학교와 서울특별시고시제 158 호 (83.3.19) 로 사업시행인가된 경희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제 25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허가 변경하고 같은법 제 24 조 제 3 항과 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6. 1. 27

서울특별시장

○ 서울대학교

1. 사업시행지 : 관악구봉천동산 8-15 일대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서울대학교종합시설 사업
3. 준공기한
- 당초 : '85.12.31

- 변경 : '88.12.31

4. 기타사항 : 변경없음

○ 경희대학교

1. 사업시행지 : 동대문구회기동40일대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경희대학교 시설확충
3. 준공기한
- 당초 : '85. 1.31
- 변경 : 87. 6.30
4. 기타사항 : 변경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45 호

화재경계지구지정

소방법 제 4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9 조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밀집화재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였기에 공고한다.

1986. 1. 27

서울특별시장

○ 지정대상 : 별첨

화재경계지구지정대상

대상지구명	지 번	대표자	지정사유	관할소방서
화교사육지역	중구수표동 11-9	김영웅 (몽장)	목조건물밀집지역	종로소방서

대상지구명	지 번	대 표 자	지 정 사 유	관할소방서
인현동인쇄 공장지역	중구인현동 1 가 99 122, 124, 126, 127, 131, 132, 133, 134, 167, 189, 193, 205, 206, 207, 211, 215, 216, 221, 222, 230 인현동 2 가 182, 183, 184, 185, 189, 190, 192 충무로 4 가 1, 2, 5, 6, 11, 12, 13, 15, 16, 21, 22, 24, 26, 28	박 오 봉 (새마을지 도자)	공장밀집지역 소방통로미흡지역	종로소방서
남대문 1 번 가지역	중구남창동 47 번지 48-3, 4, 5 번지	정 만 석	시장지역	"
통의동판자 촌지역	종로구통의동 102, 103, 105, 107, 116	안 원 식 (통 장)	복조건물밀집지역	"
창신동만물 상가지역	종로구창신동 (330-28, 29, 43, 44, 45) (340-7, 11, 12, 13, 14, 15) (345-1, 2) (370-1) (374-2) (375) (376-1, 5, 6) (387-2) (388) (389) (390-2, 3, 7, 8, 12, 13, 14, 15, 17, 18, 19, 20, 21, 28, 33, 34) (454) (457-1, 3, 8, 9, 33, 45, 57) (524-2, 3, 4, 5)	김 진 태 (자치회장)	"	중부소방서
황학동판자 촌지역	중구황학동 754 271-1, 3, 6, 9, 10 중구홍인동 3-1, 4, 9, 11-1, 2, 12-19, 13	김 영 일	"	"
청량리시장 지역	동대문구청량 1 동 176	우 진 설	시장지역 (부속 건물 14개동목조)	성동소방서
도원동다세 대지역	용산구도원동 4, 8 번지일대	홍 현 창 (통 장)	목조건물밀집지역	용산소방서

대상지구명	지 번	대표자	지정사유	관할소방서
아현동 유사 시장지역	마포구 아현동 327,326, 336,332,345,347,346,331, 330	이 문 응 (통장)	목조건물 밀집지역	용산소방서
영등포 중앙 시장지역	영등포구영등포동 2가 333 번지부터 428 번지까지일대 영등포구영등포동 5가 2- 163 번지일대	고 창 덕 (연합회장)	시장지역 (목조건물 밀집)	영등포소방서
가리봉동 1동 (다세대주택 3개지구)지역	구로구 가리봉동(1지역) 134, 252-4, 253-13, 135, 202-3, 134-22, 136-65, 134- 22 구로구 가리봉 1동(2지역) 135-3, 4, 5, 6, 7, 8, 9, 132-2, 131-33, 127-11 구로구가리봉 1동(3지역) 107-2, 111-4, 106, 108, 109, 105-1, 110-4 103-3, 113-2	정 승 규 134-22 김 우 준 136-65 (24 통장) 함 병 유 131-23 (16 통장) 김 기 석 127-11 (17 통장) 김 대 수 103-3 (7 통장) 박 효 조 113-2 (8 통장)	소방통로 미출지역	"
송인시장지역	도봉구 미아 5동 58 864, 465, 60	장 재 풍	시장지역	북부소방서
불광시장지역	은평구대조동 14-24	김 청 식	"	서부소방서
흑석시장지역	동작구흑석동 95-1	장 두 환 (자치회장)	"	남부소방서
공감시장지역	강서구방화동 620	신 용 연	"	강서소방서
천호신시장지역	강동구천호동 422-1 422-2, 422-3, 421	김 인 권	"	강동소방서

<p>◎서울특별시공고제 47호</p> <p>신문로구역제 1지구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3호 (85.2.8)로 사업시행 인가된 신문로제 1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제 3개발자 동아홍행(주)가 도시재개발법 제 33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는바,</p>	<p>동법제 15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p> <p>2. 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형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1.27 서울특별시장</p>
--	--

구 분	기 정	변 경
1) 사업의 명칭	신문로구역제 1지구 재개발사업	변 경 없 음
2) 시행구역	종로구 세종로 211-1 외 21필지	"
3) 시행면적	3,061.10㎡	"
4) 시행자	종로구 세종로 211-1 동아홍행(주) 대표이사 최상균	종로구 세종로 211-1 동아홍행(주)대표이사 고명철
5) 사무소소재지	종로구 세종로 211-1	변 경 없 음
6) 사업시행기간	85. 2. 8 - 88. 2. 7	85.2.8 - 88. 8. 7
7) 사업시행계획서	생 략	생 략
8) 규 약	"	"
9) 건축면적	본 건축계획은 건축허가로서 확정한다.	
· 대지면적	2,560.90㎡	변 경 없 음
· 건 폐 율	35.15%	37%
· 용 적 율	695.76%	738.87%
· 층 수	지하 4층, 지상 20층	지하 5층, 지상 20층
· 주 용 도	업무시설(지하 1층, 판매시설)	변 경 없 음

나. 공람기간 : 86. 1.28 - 86. 2.27
 다.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공고제 4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
시행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6 호('78.2.10) 및 동고시 제 73 호(78.3.27)로 도시계획사업(학교) 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동고시 제 135 호(85.3.4)로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시행허가한 관악구신림동 1679 번지일대 남강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동법 제 85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보인다.

1986.1.27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1679 번지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시행 남강중고등학교(기존학교) 재육관증축
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학교법인 남강학원 이사장은 병기
라) 사업시행면적 - 43,760㎡

마) 건축면적

구분 면적	기 존	증 축	계	비 고
건축면적	4,350.20㎡	1,295.28㎡	5,645.48㎡	재육관 1 동증축
건축연면적	16,662.88㎡	2,270.64㎡	18,933.52㎡	지하 1 층지상 2 층

바) 사업시행기간 - 85.4.1 ~ 86.1.1.
사) 완료관계도서 - 별첨(생략)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473 호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제목을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처리규정"으로 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p>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 67 조의 2 에 규정된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이하 " 고충심사 " 라 한다)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충심사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이하 " 위</p>	<p>원회 " 라 한다) 설치 기관장과 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에게 적용한다.</p> <p>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3 조 (고충심사처리 관장 및 관할) 고충심사처리의 관장 및 관할은 다음과 같다.</p>
<p>위원회 명칭</p> <p>서울특별시 제 1 인사위원회 (서울특별시 보통고충심사위원회)</p> <p>서울특별시 제 2 인사위원회</p> <p>각 구 인사위원회</p>	<p>심사대상 및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급이상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1 심) ○ 6 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재심) ○ 6 급이하 국가공무원 (1 심) ○ 6 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1 심) <p>소속 6 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1 심)</p>
<p>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4 조 (고충처리대상의 범위)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① 근무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봉급, 수당등 보수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3.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주거, 교통, 휴양, 식사 편의제공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p>② 인사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진, 전직, 진보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2.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 	<p>련, 복무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p> <p>3. 상훈, 제안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p> <p>③ 기타 신상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 종교별, 연령별등에 의한 차별대우 2.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p>제 6 조 제 2 항 본문중 " 당해 고충심사위원회 " 를 " 당해 인사위원회 " 로 하고, " 담당위원을 지정함과 동시에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서 " 를 " 담당위원을 지정함과 동시에 필요시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서 " 로 한다.</p>

<p>제 6 조 제 5 항 본문중 "고충심사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p> <p>제 8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8 조 (심사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p> <p>제 11 조 본문중 "기관별 고충심사위원장"을 "기관별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p> <p>제 12 조 본문중 "고충심사위원장"을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고충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p>	<p>한다.</p> <p>(별표 4) "○○○고충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하고, 본문중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 97조)"를 삭제한다.</p> <p>(별표 7) "○○○고충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하고 본문중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 97조 제 3 항 제 1 호)"를 삭제한다.</p> <p>부 칙 (1986. 1.30)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p>
--	--

사 령

© 1986년 1월 28일

령제 3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위	직 급
김광시	올림픽준비단 문화담당관	은평구	시민국장	지방서기관
유영식	은평구시민국장 직무대리	올림픽준비단	문화담당관	서기관
전희상	종합건설본부 공사 2 부장	강서구	도시정비국장	지방건축기정
전기석	강서구 도시정비국장 직무대리	주택개발과		지방건축기좌

서울특별시장